

## 항 고 장

항고인: 김명호,  
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중앙하이츠빌 105 동 1504 호  
(휴대폰:010-5590-8913)

서울고등법원 2005 나 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 관련, 동 법원이 2006 년 5 월 12 일, 방어방법각하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, 민사소송법 제 439 조(항고의 대상)에 따라 항고를 제기합니다.

### 원 결정의 표시

2006. 5. 1. 자 방어방법각하신청은, 먼저 그에 대한 각하신청은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, 피고가 지난 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(입증자료 1: 5 월 12 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)

항고 취지

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함.



항고 이유

박홍우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.

1. “ 먼저 그에 대한 각하신청은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” 에 대하여

‘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한다’ 는 재판장 주장에 대한 근거규정은, 민사소송법은 물론 민사소송규칙에도 없습니다.